

<b>보도 일시</b> (인터넷) 2022. 6. 21.(화) 10:00 (지면) 2022. 6. 21.(화) 10:00	<b>배포 일시</b> 2022. 6. 20.(월) 15:30	
<b>담당 부서</b>	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	책임자 과 장 정희권 (044-203-6877)
		담당자 서기관 김동로 (044-203-6543)
		사무관 강행화 (044-203-6546)
	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	책임자 과 장 김선미 (044-203-6569)
		담당자 교육연구관 진창원 (044-203-6563)
		학생지원국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
		담당자 사무관 최현정 (044-203-6312)
		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
		담당자 사무관 정태성 (044-203-6302)
		사무관 조준영 (044-203-6183)
	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안전팀	책임자 팀 장 김관영 (044-203-7131)
	담당자 사무관 김기필 (044-203-6299)	

## 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
### 주요 내용

-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,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내용 등 규정
-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마련
-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
-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,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 검토 절차,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·지원 범위 등 규정

□ 교육부는 6월 21일(화),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 [ 1.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]

- 「학교급식법」 개정(2021.12.28. 공포, 2022.6.29. 시행)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.
  -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.
    - ※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: (기존) 모든 국·공립 유치원 및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→ (개정) 모든 국·공립 유치원 및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
  - 아울러,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, 위생·안전관리,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   - 교육감이 유치원 수,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,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.
  - 또한,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,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·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.
  -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, 재난 발생으로 급식이 어려운 경우 식재료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[ 2.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]

- 「특수교육법」 개정(2021.12.28. 공포, 2022.6.29.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.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의 유형에 ‘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’를 추가하고,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‘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’로 선정하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다.

- 대학의 장은 ‘화면해설’, ‘폐쇄자막’ 또는 ‘한국수어 통역’을 제작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공하거나, 지원인력 배치,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추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,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하여,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### [ 3.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]

- 「교육시설법」 개정(2021.12.28. 공포, 2022.6.29. 시행)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.

※ 「교육시설법」 (2021.12.28. 공포, 2022.6.29. 시행) 주요 개정내용

- | 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 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근거 마련(제 10조의2 신설)</li> <li>②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법적 근거 마련(제 26조의2, 제26조의3 신설)</li> <li>③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심리치료 지원근거 마련(제34조 개정)</li> </ul> |
|--|

-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초·중·고·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,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하였다.
-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\*뿐만 아니라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로 규정하였다.

\* 학생,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
-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 실태조사,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기획,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련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【붙임】 1. 6.21.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
 2.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

학교급식법 관련	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희권 (044-203-6877)
		담당자	서기관	김동로 (044-203-6543)
			사무관	강행화 (044-203-6546)
특수교육법 관련	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선미 (044-203-6569)
		담당자	교육연구관	진창원 (044-203-6563)
	학생지원국 장애 학생진로평생교육팀	책임자	팀 장	구본억 (044-203-6063)
		담당자	사무관	최현정 (044-203-6312)
교육시설법 관련	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	책임자	과 장	정영린 (044-203-6308)
		담당자	사무관	정태성 (044-203-6302)
	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안전팀		책임자	팀 장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필 (044-203-6299)

순	법률안	주요내용
1	<p><b>학교급식법 시행령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<b>50명 이상</b>으로 확대함</li> <li>•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<b>5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, 위생·안전관리,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</b></li> <li>•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<b>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,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·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</b></li> </ul>
2	<p><b>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하고 <b>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</b></li> <li>•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<b>장애유형별 편의의 형태와 편의를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</b></li> <li>•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위탁 시 연중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기한 폐지</li> <li>•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을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현행화하여 규정</li> <li>•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·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</li> </ul>
3	<p><b>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교육시설법」개정(‘21.12.28. 공포, ‘22.6.29. 시행)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</li> <li>•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,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 검토 절차,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·지원 범위 등 규정</li> </ul>




**1 학교급식 시행령(일부개정)**

- 「학교급식법」이 개정(2021. 12. 28. 공포, 2022. 6. 29. 시행)됨에 따라,
  -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유치원의 규모,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의 가정에 제공하는 식재료 등의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.
  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(학교급식 대상 확대)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였다.
  - (영양교사의 지원 대상 및 내용) 영양교사를 두지 않는 원아 수 5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, 위생·안전관리,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영양교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둘 수 있도록 하였고,
    - 교육감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수, 유치원 간의 이동 거리, 유치원 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.
  - (재난 발생 시 식재료 등의 지원 방법)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으로 하여금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·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원아 수 5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급식 위생·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식재료 등을 지원토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및 생산 농가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	 공개보시	 개인정보보시	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학생건강정책과				과장 정희권(6877), 김동로 서기관(6543) 강행화 사무관(6546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학교급식의 운영원칙) ① (생 략)</p> <p>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학교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~ 9. (생 략)</p> <p>제2조의2(학교급식 대상)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”이란 「<u>유아교육법</u>」 제7조제3호에 따른 <u>사립유치원</u> 중 원아수(「<u>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</u>」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수 현황의 합계</p>	<p>제2조(학교급식의 운영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이나 그 밖에 학생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-----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의2(학교급식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(이하 “사립유치원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

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.

제5조(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교육청(이하 “시·도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부교육감(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)이 된다.

③위원은 시·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, 학교의 장, 학부모, 학교급식분야 전문가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

----- 50명 -----  
-----.

제5조(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학교급식위원회(이하 “학교급식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-----

-----.  
②-----  
-----  
-----광역시·특별자치시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③-----  
-----광역시  
시·특별자치시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 
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 
사람이나 -----  
-- 인정하는 사람 -----  
-----.

④----- 1

인을 두되, 시·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8조의2(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) ① 법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(국립·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)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)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.

<신 설>

명-----  
-----.

제8조의2(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)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·공립유치원(이하 “국공립유치원”이라 한다)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-----국공립유치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-----  
-----.

③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호 및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급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(급식비 지원기준 등) ① ·

식 대상인 사립유치원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하여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는 제3항의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.

1. 식단작성 및 영양관리
2. 위생·안전관리
3.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
4. 그 밖에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수, 유치원 간의 이동 거리,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제10조(급식비 지원기준 등) ① ·

② (생 략)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교육감은 법 제9조제3항 전 단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센터 또는 업체로 하여금 법 제10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가정으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

가.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

나.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나 제조·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

2.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
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방법

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,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제공하는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,
-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탁할 때 협의 기한 없이 연중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.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(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등)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'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'를 추가하고(제10조제1항 신설)
    -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지니면서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체장애 또는 정서·행동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지닌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(중도중복장애)과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닌 사람(시청각장애)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다. (별표 제11호 신설)
  - (영상물에 대해 제공하는 편의의 형태)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,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하고,(제32조의1 신설)
  - (영상물에 대한 편의 제공 방법)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 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과 지원인력, 학습보조기기·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(제32조의2 신설)
  - (사립 특수교육기관 교육 위탁)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현재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그 사립학교의 장과 협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, 수시로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 배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협의 기한 없이 연중 수시로 협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.(제4조제1항)

- (특수교육교원 배치인원 조정 범위의 확대)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할 때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의 비율의 '40퍼센트'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던 것을 '50퍼센트'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.(제22조)
- (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의 기준 현행화) 유치원 의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을 관계법령인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현행화하였다.(제15조)
- (학급을 설치·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)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·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·재정적 지원의 내용으로 ① 학급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, ②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, ③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·교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.(제20조의3)

#### 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추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,
-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하여, 장애 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특수 교육정책과	과장 김선미(6569), 진창원 교육연구관(6563)
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	과장 구분억(6063), 최현정 사무관(6312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32조(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)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,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</u></li> <li><u>2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(이하 이 조에서 “청각장애인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</u></li> <li><u>3.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, 몸짓,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통역</u></li> </ol> <p><u>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(이하 이 조에서 “수업영상물”이라 한다)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</u></p>

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
1.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
2.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·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



###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(일부개정)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은 「교육시설법」 개정('21.12.28. 공포, '22.6.29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절차)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,(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)
- (사전기획의 대상 규정 등)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초·중·고·특수학교(사립학교 포함)의 시설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,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하였다.(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 신설)
- (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)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로 규정하였다.(제25조의2 제2항 신설)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소방시설 실태조사,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기획,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련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교육시설과	과장 정영린(6569), 정태성 사무관(6302) 조준영 사무관(6183)
교육시설안전팀	팀장 김관영(7131), 김기필 사무관(6299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(이하 “안전·유지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교육시설의 환경</u>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: <u>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2조(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교육시설의 감염예방, 환경</u> ----- ----- -- <u>감염병의 예방·관리, 쾌적한</u>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2조의2(소방시설 실태조사</u> <u>시기 및 방법 등) ① 교육부장관</u> <u>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</u> <u>소방시설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</u> <u>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</u> <u>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</u> <u>방시설등을 말한다)의 설치 및</u> <u>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</u> <u>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소방시</u> <u>설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다음 각</u> <u>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</u></p>

다.

1. 정기조사: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

2. 수시조사: 재난·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
②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,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·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재난·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2조의3(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

<신 설>

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 
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 
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3조의2(사전기획의 대상 등)

①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  
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 
는 교육시설 사업”이란 「초·중  
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 
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 
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 
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 
말한다.

②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  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 
가”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 
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
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 
말한다.

1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  
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 
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  
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  
람
3.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  
야 박사 학위 소지자

<신 설>

제23조의3(사전기획 결과의 적정

성 검토 절차 등) ① 초·중·  
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법  
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  
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 
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
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  
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
는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법 제  
26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 
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 
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  
호의 기관(이하 “적정성검토기  
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  
다.

② 초·중·고등학교의 감독기  
관의 장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 
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 
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 
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 
적정성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  
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 
요청해야 한다.

1.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 
경우
2.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  
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
3.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

상 증감하는 경우

4.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

5.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받은 적정성검토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·중·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초·중·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착공 전까지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적정성검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
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기획 결과



제25조(전문기관의 지정) <신설>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③ ~ ⑦ (생략)

<신설>

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5조(전문기관의 지정)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- 1.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
- 2.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

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③ 제2항-----  
-----  
-----.

④ ~ ⑧ (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

제25조의2(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)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의 보상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- 1.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: 교육시설(조형물, 옹벽, 울타리

등 건물 외 공작물을 포함한  
다)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 
드는 비용

2.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 
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  
의 사람(이하 “교육시설이용  
자등”으로 한다): 다음 각 목  
의 비용

가. 요양비: 교육시설안전사  
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 
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 
드는 비용 중 교육시설이  
용자등이 부담하거나 교육  
시설이용자등의 친권자·  
후견인이나 그 밖에 교육시  
설이용자등을 부양할 법률  
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  
담하는 비용

나. 장해보상비: 가목의 요양  
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  
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  
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  
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  
여 고시하는 장애등급에  
따른 비용

다. 간병비: 가목의 요양비를  
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

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에 드는 비용

라. 유족보상비 및 장례비: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

마. 그 밖에 사고 유형,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

② 교육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.